

보도 일시	2022. 3. 31.(목) 12:00	배포 일시	2022. 3. 30.(수) 16:00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책임자	과장 이경제 (044-200-2375)
		담당자	경위 변지환 (044-200-2377)

법정부 대응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

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(3.31), 관계부처 합동 「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」 확정

– 전국 지역별 관계부처 TF 상시 운영, 관계부처 합동 일제점검 실시, 채용절차법·건설기계관리법 등 법 실효성 제고 등 방안 추진

예방조치 강화	▲ 관계부처 TF 상시 운영, ▲ 건설현장 신고센터 효과성 제고, ▲ 건설업계 및 노동계 자체적인 개선 유도
불법행위 대응 강화	▲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, ▲ 관계부처 합동 점검
법·제도 개선	▲ 채용절차법,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추진, ▲ 건설현장 실태 파악 및 인력부족 개선방안 검토

□ 정부는 3월 31일(목)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4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「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」을 심의·확정했습니다.

* 참석: 기재부·과기정통부·법무부·국방부·고용부 장관, 공정위원장, 행안부·산업부·농식품부·복지부·국토부 차관, 산림청장, 중기음부즈만, 문체부 차관보, 경찰청 차장, 소방청장, 교육부 차관보, 환경부 물환경정책실장, 기상청 차장 등

□ 최근 건설현장 내 노조의 불법행위는 채용 강요뿐만 아니라, 금품 요구, 폭행·협박 등 다양한 유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,

○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,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습니다.

-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, 해당 건설사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공정을 지연시키겠다고 협박, 시멘트 운송 전면 중단 등
- ‘준법 투쟁’이라는 명목으로 안전·환경 관련 법 위반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신고
-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공사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며 입구 점거
- 군소노조는 채용 요구 시 집회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노조발전 기금을 수백만원~수천만원 요구

○ 이는 건설공사 공기(工期) 지연, 비조합원 등에 대한 공정한 채용기회 상실 등 사회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.

□ 정부는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 「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(팀장: 국무1차장)」를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*를 거둔 바 있으나,

* (고용부) 채용절차법 과태료 6건(9,000만원) 부과절차 진행, (경찰청) 143명 기소 송치(2명 구속), (공정위)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(1건)에 대해 시정조치 착수

○ 현장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였습니다.

○ 정부는 앞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말붙이지 못하도록 그간의 관행·제도·문화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.

① 불법행위 예방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.

① 건설현장에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,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전국 지역별로 상시 운영하겠습니다.

○ 각 부처별로 “건설현장 담당자”를 지정하여, 국토부 신고센터 접수 현장, 고소·고발이 이루어진 현장, 대규모 집회 현장 등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.

② 국토부가 직접 운영 중인 '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'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.

○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가 법 집행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매뉴얼·우수사례 등을 배포하는 한편,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신고센터를 홍보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신고 사건의 중간 처리상황 파악 및 민원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국토부 -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업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.

③ 건설업계 및 노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.

○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의지를 건설업계와 노동계에 명확히 전달하고, 특히 노조는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지역·업종별 건설협회가 지역의 건설기계 임대·채용 수요 등을 파악한 후에 공통의 플랫폼을 통해 계약·채용하게 함으로써, 건설업체가 직접 채용 및 계약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.

② 불법행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
① 정부는 어떤 현상이든 사유를 불문하고,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.

○ 건설현장 출입방해·건조물 침입·신분증 검사 등은 물론, 폭력·소음규제 위반 등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빠짐없이 처벌함으로써, 공사 진행 방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하는 선례를 마련하고, 동일·유사한 법 위반 행위들에 적극 적용하겠습니다.

- 이에 따라, 건설노조의 **공정거래법 위반**(사업자단체 금지행위) 사건(총 21건)을 상반기 내 처리할 계획입니다.

* 제재 수준도 시정명령뿐만 아니라, 과징금 부과 및 고발 등을 적극 활용

② 이미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,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

○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,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여 관계자 면담 및 상황 파악, 적용법 판단을 진행하는 등 유기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* 국토부: 현장 관계자 및 건설사 면담, 현장 불법행위 사실관계 파악 등
경찰청: 출입 방해, 신분증 검사 등 공사 진행 방해 행위에 대한 법 집행
고용부·공정위: 소관법 위반 여부를 조속히 검토, 행정처분 절차 등 진행

③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일제 점검」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정부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‘집중 관리 건설현장’을 선정하여 노조 불법행위를 조속히 해결하는 우수 사례를 만들고, 이를 현장에 전파·홍보할 계획입니다.

③ 법·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.

①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였으나, 법·제도적 미비로 인한 일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점을 조속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채용절차법에 따른 법 위반사항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, 출석 불응·허위 보고·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.

○ 아울러, 건설기계 소유자가 건설기계로 허가되지 않은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인근 등을 점유하며 피해를 입히는 경우,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규정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.

② 건설업 내 인력 부족, 불법체류자 문제 등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건설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.

○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가 외국인 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 허가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, 건설업 주요 직종별 인력양성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□ 김부겸 국무총리는 “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고 고착화되면 건설현장 내 안전과 경쟁력을 더 이상 담보할 수 없게 된다.”고 하며,

○ “노동계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,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.”고 강조하였습니다.

○ 아울러, “다음 정부에서도 정책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하며, 관계부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고, 철저하게 법을 집행해달라.”고 당부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이경제 (044-200-2375)
		담당자	경 위	변지환 (044-200-2377)
<공동>	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	책임자	과 장	김병수 (044-202-7432)
		담당자	사무관	정다비 (044-202-7436)
<공동>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우정훈 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나은종 (044-201-3539)
<공동>	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	책임자	과 장	전상훈 (044-200-4551)
		담당자	서기관	이현준 (044-200-4553)
<공동>	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송영호 (02-3150-2068)
		담당자	경 정	최연석 (02-3150-1144)